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19호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발표('21.10), 제2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21.12) 등에 따라 피평가자인 지자체의 다양한 지속가능 정책을 유도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예외조건을 신설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 지정 시 평가결과 개선정도를 판단하여 제외 가능한 단서 규정을 신설

나. 지정 이후 특별종합대책 수립 기한을 10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

3. 의견제출

이「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8, 378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이유등 포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ejlee0357@korea.kr
- 팩스 : 044-201-5579